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8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봉양순, 강동길, 김경훈,  
김재진, 남궁역, 박승진,  
박춘선, 박칠성, 송도호,  
이민옥, 이소라, 이영실,  
임종국, 정준호, 최재란  
의원(15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기덕, 김동욱,  
김영옥, 김원중, 김지향,  
김춘곤, 남창진, 도문열,  
문성호, 박 석, 박영한,  
박유진, 박환희, 서상열,  
송경택, 유정인, 이상훈,  
이원형, 이종태, 임만균,  
최민규, 최진혁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42조제2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한파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상황에서 수도사용자등의 수도계량기 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보온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수도사용자등이 보온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함(안 제42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 본문 중 “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”를 “시의 부담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<u>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리 또는 설치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생   략)</p>	<p>제42조(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시의 부담으로</u> ----- ----- . <u>다만,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,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2072100000004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봉양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7.21

회신일 : 2022.07.26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2조제2항 중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2조제2항 중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어 서울시가 부담하는 수도계량기의 수리 또는 설치비 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